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이북5도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이북5도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도사무소의 설치 대상이 되는 지역을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여 현행 시·도사무소 설치 범위의 공백을 보완하고 향후 지방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종류의 변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이북5도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이북5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위원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이하 "시·도"라 한다)와의 연락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에 사무소를 둔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시·도사무소) ① <u>위원회의 사무에 관하여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의 연락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에 사무소를 둔다.</u>	제8조(시·도사무소) ① <u>위원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이하 “시·도”라 한다)와의 연락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에 사무소를 둔다.</u>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 총무과	
연 락 처	(02) 2287 - 2529